

##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비용지원 제외대상, 지원범위 및 시기(제4조 ~ 제6조)
- 비용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영동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피소공무원”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형사입건 포함)을 당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소 또는 피소 사건

발생(기소 전 수사 단계도 포함한다) 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비용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외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피소공무원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속 공무원이 피소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 공무원이 패소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입건·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소속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징계 처분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4. 그 밖에 군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송비용 지원범위) ① 피소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소송비용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은 총 5천만원 한도로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시기) ① 소송비용은 피소공무원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 판결 확정 이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 확정 전에 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소공무원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선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제7조(지원신청) 피소공무원이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지원 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5.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6.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정산) 피소공무원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 정산액은 별표와 같다. 단, 특이민원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채권보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3. 퇴직금, 금융기관 예·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군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소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소송비용지원심의 위원회를 둔다.

1. 직무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
2. 최종판결 확정 전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3.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
4.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소송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직무관련 민·형사상 소송중인 사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며, 소송이 확정된 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

[별표]

## 소 송 비 용 회 수 기 준 (제9조 관련)

구 분	회 수 기 준	
	내 용	금 액
민사소송	1. 해당 공무원이 전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 전액
	2.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형사사건	1.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2.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공 통	1. 소속 공무원이 다른 법규 및 제도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2.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 서 약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본인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영동군에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 하

